

광주지방법원 2017. 2. 8 선고 2016가단526976 판결 [건물 매수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7. 12. 15 선고 2017나52343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7. 2. 8 선고 2016가단526976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 중중

변론 종결 2017. 1. 18

판결 선고 2017. 2. 8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

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2007. 6. 5. 피고로부터 별지 1목록 제1,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도면 표시(가)부분 190㎡, 별지 1목록 기재 제1, 2항 기재 토지 별지 2도면 표시 (타)부분 114㎡, (하)부분 26㎡, 별지 1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(파)부분 38㎡(이하 위 각 부분을 '원고 점용 부분'이라고 한다)을 임차하였고, 원고 점용 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,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바,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는 위 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인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원고 점용 부분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심재현

별지